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」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	수출용 원재료에 ---------- ----------	○ 훈령 제명 변경* * 법 제명 변경 사항 반영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와 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고시 폐지 및 통합 사항 반영 :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→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수출용원재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 「수출용 원재	○ 고시 폐지 및 통합 사항 반영 :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

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환급고시”라 한다) 제2조와 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소요량고시”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환급고시”라 한다) 제2조에서 ----------.	관한 고시 →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제3조(업무분장) ① (생 략)	제3조(업무분장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의 기업심사부서(심사총괄과 또는 심사관실을 말하며, 대구·광주세관의 경우에는 심사과를 말한다)에서 담당한다.	② ---------- 관세조사 부서(심사총괄과 또는 심사관실을 말하며, 대구·광주본부세관의 ----------.	○ 인용 훈령(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)의 용어 변경 반영 : 기업심사 → 관세조사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	③ ---------- ----------	○ 인용 훈령의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

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을 적용받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종합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.	갱신심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갱신심사부서에서 ----.	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→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
④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	④ ---------- 갱신심사팀장이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--. 갱신심사팀장이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	: 종합심사 → 갱신심사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
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
제9조(환급후심사 사항) ① ~ ② (생 략)	제9조(환급후심사 사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
③ 제2항에 따른 소요량심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	③ ---------- 「관세조사 ----------.	○ 인용 훈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: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→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
제16조(과다환급금 등의 징수) ① 환급심사, 소요량심사 및 기업심사(범칙조사 포함)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 및 영 제	제16조(과다환급금 등의 징수) ① ---------- 관세조사(범칙조사 포함) ---------- -- 심사·조사를 ----------	○ 인용 훈령(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)의 용어 변경 반영 : 기업심사 → 관세조사

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. ② ~ ④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제18조(소요량심사 의뢰) ① 세관장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고시 제17조에 따라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받은 소요량부서장은 소요량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16조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8조(소요량심사 의뢰) ① ---- ---------- ---------- 환급고시 제113조에 -------- ---------- ------- --------. ② ---------- ---------- 환급고시에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고시 폐지 및 통합 사항 반영 :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→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제19조(실지조사 의뢰) 세관장은	제19조(실지조사 의뢰) --------	○ 인용 훈령(관세조사 운영에 관한

제10조에 따른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부서장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 관세조사 부서장에게 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훈령)의 용어 변경 반영 : 기업심사 → 관세조사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제27조(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) ① 기업심사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5장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	제27조(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) ① 관세조사 부서장은 --- ---------- 「관세조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○ 인용 훈령(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)의 용어 변경 반영 : 기업심사 → 관세조사

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	
제30조(준용 규정) 기업심사부서장의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 심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을 준용한다.	제30조(준용 규정) 관세조사 부서장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「관세조사 ---------- ----------.	○ 인용 훈령(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)의 용어 변경 반영 : 기업심사 → 관세조사
제32조(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32조(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	○ 본부세관 명칭 통일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각 본부세관의 심사국장(서울본부세관은 심사1국장,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장, 광주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)이 되고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, 대구본부세관은 -------- 광주본부세관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	
1. 심사부서(환급심사과를 포함한다)의 심사팀장(과장) 또는 주무 중 3명 이상 6명 이내(대구·광주세관은 심사과 주무 2명)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이내(대구·광주본부세관은 ------- --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	③ ---------- ----------	

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	----------.
1. 서울·부산·인천세관에 두는 위원회: 6명. 이 경우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되, 그 중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	1. ------ 인천본부세관에 ----------.
2. 대구·광주세관에 두는 위원회: 4명. 이 경우 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	2. --- 광주본부세관에 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각 본	⑤ ----------

부세관의 심사총괄과(서울본부세관은 심사총괄1과,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,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)가 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대구본부세관은 ----- 광주본부세관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	
제3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5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 2025년 1월 1일 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
<신 설>	부칙<제2363호(2024. 12. 4.)>	○ 부칙 설정

	이 훈령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